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의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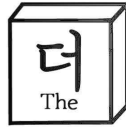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더 빛 남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더빛남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4045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3.2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6.02

더빛남 가맹사업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8길 5, 1층 104호(송파동)		
대표번호	(비공개)	이메일	thevietnam2495@gmail.com
홈페이지	thevietnam.co.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the_viet_nam_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5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8
1. [더빛남] 을 시작한 날	
2. [더빛남] 의 연혁	
3. [더빛남] 의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더빛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더빛남] 가맹점 수	
6.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더빛남]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더빛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2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3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9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2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4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6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38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별첨서류

-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 [별첨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별첨3]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가맹본부의 일반현황****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더 빛 남	더빛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8길 5, 1층 104호(송파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1.05.14	임상민	(비공개)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733-05-0220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더빛남	더빛남은 베트남음식 전문점입니다.
상 호	더 빛 남 OO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명
영업표지(상표)	더빛남	더빛남 브랜드 네임 상표 출원 번호: 4020220218336

영업표지(기타)		더빛남 브랜드 로고, 심볼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자료는 [별첨1] 참조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131,634	8,740	122,894	614,666	90,536	99,301
2023년	421,007	34,765	386,241	573,605	381,905	385,875
2022년	4,747	4,381	366	231,050	61,672	64,86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상호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임상민 / 대표자	2021.05.14 ~ 현재	더 빛 남	대표자	더빛남 사업 총괄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직전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4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더빛남]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일자	번호	출원인	존속기간 만료일
더빛남	가맹계약상 약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출원일 2022.11.28. 등록일 2024.04.29.	출원번호 4020220218336 등록번호 4021885880000	임상민	2034.04.29.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더빛남] 가맹사업현황

1. [더빛남] 을 시작한 날: 2024년 6월 2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05.14)

2. [더빛남]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더 빛 남	더빛남	임상민	2024년 6월 2일 ~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8길 5, 1층 104호(송파동)

3. [더빛남]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더빛남	기타외식	차돌박이 쌀국수, 양지쌀국수, 고구마짜조, 새우짜조, 웨딩쇼마이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더빛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4.12.31.			2023.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1	1	1	-	1	1	-	1
서울	1	-	1	1	-	1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더빛남]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4년	-	1	-	-	-	1
2023년	-	-	-	-	-	-
2022년	-	-	-	-	-	-

6. [더빛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더빛남]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더빛남]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은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더빛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직전연도 말 기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영업기간
2024년	1개	236일(7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 말 [더빛남]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기재하지못하였고 근거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VAT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공개)	-	2024.1.1.~12.31	(비공개)	(비공개)	-	-
(비공개)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지점	전화번호
국민은행	전지점 및 온라인뱅킹	1588-9999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	----

은행지점 방문시	①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수령 → ② 은행에 방문하여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③ 가맹금예치증서 수령 및 보관
인터넷뱅킹 이용시	①인터넷뱅킹 접속 후 로그인 → ② 부가서비스 -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 가맹점사업자 클릭 → ③ 가맹본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④ 가맹본부 확인 → ⑤ 가맹점사업자 정보 입력 및 예치금액 입력 → ⑥ 가맹금 예치완료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550만원	계약체결과 동시	- 가입비(가맹비의 10%) - 개점에 필요한 컨설팅 대가(가맹비의 90%)
교육비	330만원	계약체결과 동시	- 개점 전 교육 대가
총계	880만원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보증금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 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VAT없음)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보증금	300만원	계약체결과 동시	가맹금 및 물품공급대금 미지급, 가맹계약 위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 포함)	
	신규 가입자	양수인
가맹비	550만원	275만원
교육비	330만원	330만원
보증금	300만원(VAT없음)	300만원(VAT없음)
합계	1,180만원	905만원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 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49.6㎡기준 (15평)	3.3㎡당 금액			
인테리어/설비/테이블	자율	3,850만원	256만원	계약체결과 동시	발주 또는 시공 전 계약취소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간판	자율	110만원	-			
주방집기	자율	550만원	-			
의자1)	자율	220만원	-			
POS 및 키오스크	협력업체	100만원	-			
초도물품	가맹본부	330만원	-			
총계		5,160만원	-			

1) 의자는 개당 11만원 (VAT포함)으로 20개로 산정하였습니다

① 상기 비용 외 점포 상황에 따라 내부철거, 닥트, 화장실, 전기 및 도시가스 증설, 소방설비 등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더빛남] 가맹사업의 통일성에 부합하도록 "갑"이 제시하는 컨셉, 디자인, 자재, 컬러 기준에 맞춰 시공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를 감독 및 검수할 수 있으며 감리비로 3.3㎡당 11만원(VAT 포함)을 시공 전에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최소 점포 기준 49.6㎡(15평) 권장 → 당사 브랜드와 적합성 판단	점포의 입지선정과 계약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설비, 집기관련 물품은 당사가 공급업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업체를 선정하여 당사의 직영점을 표준으로 시공 및 구입하면 됩니다.

8) 귀하가 지급하여야하는 가맹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POS매출액의 2.2%	매월 5일 지급	한달간 영업표지(상표권)사용, 가맹점관리 대가로 반환불가
POS	협력업체	구입비 100만원 / (월 렌탈도 가능)	업체와 협의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영업표지 변경 비용	자율	협의	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되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 POS의 경우 현재는 입구에 키오스크를 두는 방식이고 추후 테이블에 태블릿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VAT 미포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I-9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계약에 한함)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 양도양수에 따른 가맹비 275만원(VAT포함)과 가맹점을 운영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 교육비와 가맹비 550만원(VAT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7.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 13 조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 | |
|---|
| <p>①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더빛남"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을"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구)더빛남 또는 "전)더빛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갑"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갑"이 철거 및 삭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p> <p>② "을"은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갑"과 협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p> |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품목 중 거래형태가 **강제인** 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사업을 금지합니다.

※ 상기 품목 중 거래형태가 **권장인** 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거나 귀하가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구입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부합해야하며 사전에 당사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당사는 신메뉴 개발, 고객의 니즈, 사업전략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직전연도 기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 부터 구입해야하는 주요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V.3.3) 의 상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공급품 공급중단 또는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업계시장과 소비자동향,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변동이 필요한 경우 당사가 별도 통지해드립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베트남음식 전문점	더빛남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서에 기재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네이버지도-거리측정 기준, 귀하의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더빛남]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얻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을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전연도 말 기준 [더빛남]영업표지로 국내에서 판매된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21.01%	78.99%	-	-

비중이 기재된 채널은 국내 총 매출액에서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온라인 전용상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더빛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 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아래 표의 계약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① 인/허가 취득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메뉴 및 원/부재료판매의 제한 ④ 메뉴 판매의 제한 등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⑧ 광고 및 판촉 ⑨ 경업 금지 ⑩ 상품공급의 중단 ⑪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⑫ 관계법령의 준수 ⑬ 고객 컴플레인 관련
3. 제 7 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제8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제 9 조 당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6.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제 18 조제 2 항 귀하의 요건 변동 시 당사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8.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로열티, 교육비 등),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9. 귀하가 당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예: 성추행, 폭행, 욕설 등)를 할 경우
1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경영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입비 및 점포실사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2)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의 존속 중 귀하가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주주로 참여하는 것 포함)로 [더빔남]과 동일 및 동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6-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베트남음식 전문점	대한민국 전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①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11시 ~ 오후8시	연중무휴	상권에 따라 협의 가능

② 다만 귀하가 장기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 승인해드립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상권에 따라 상이	직접 근무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자

※ 권장 종업원 수는 상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관리·감독 시기
Quality(상품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감독 항목 확인 → 독결과 고지 → 완료	사전통지 또는 불시 암행방문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브랜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	<광고>

	및 지역 별 광고	광고 브랜드 광고 + 가맹 점 모집광 고	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 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 담비율 안내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동의→ 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판촉	전국 및 지역별판 촉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개별판촉		-	100%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 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 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5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계약해지·종료 시 귀책사유 있는 자가 제13조 제1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상대방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위약벌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교육이 시작되기 전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에게 예치 가맹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다. 교육이 시작되면 계약은 해지할 수 없고 가맹금도 반환되지 않는다.
- ③ 교육이 시작된 이후 "을"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을"의 영업개시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잔여 계약 월 수 × 50만원(VAT없음)
잔여 계약 월 수를 산정할 때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한다.

- ④ "을"이 제9조를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⑤ "갑" 또는 "갑"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 및 "을"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갑"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⑥ 본 조의 경우 "갑" 또는 "을"의 지급요청일에 각 상대방이 지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타 계약서 및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⑦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계약 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	50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D-50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선정 및 실측	-점포 선정 -공사비 산출	D-40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D-34 ~ 31	
공사 착수	-인테리어 공사 실시	D-34	
교육실시	조리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D-13 ~ 7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장고 등 집기 및 비품 입고	D-5	
초도물품 입고	-식자재, 원부재료 등 입고	D-2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

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 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더빛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개점 전)	조리교육, 고객응대 및 점포운영 노하우 등	개점 전 직영점에서 실습교육	계약체결과 동시	필수 교육
수시교육 (개점 후)	신메뉴 교육 및 보수교육	실습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교육 전에 실비 및 교육시간 공지)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더빛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VAT포함)	비고
최초교육 (개점 전)	직영점에서 7일	330만원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개점 후)	교육별 상이	가맹점사업자 부담	개점 후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더빛남”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하(교육내용에 따라 귀하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는 당사가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재교육과 함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메뉴 교육 외 수시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다음과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더빛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8길 5, 1층 104호(송파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의 직영점 평균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7개월	직영점 1개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044-200-4943)**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주소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 서	제 공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제 공 장 소		
	제 공 방 법	<input type="checkbox"/> 직접전달	
	제 공 받 은 가 맹 희 망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수령사실 자필확인란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작성	가맹본부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주소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 서	제 공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제 공 장 소		
	제 공 방 법	<input type="checkbox"/> 직접전달	
	제 공 받 은 가 맹 희 망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수령사실 자필확인란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작성	가맹본부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	------------